

1. 자치경찰제도와 비교하여 국가경찰제도가 갖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6년 2차 기출문제)

- ①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전국적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 ③ 경찰조직의 운영·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 ④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원활하다.

정답) ③

지문의 내용은 자치경찰제도의 장점에 해당한다.

2. 「국회법」과 관련된 경찰의 지역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6년 2차 기출문제)

- ① 국회에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 ② 국회 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 ③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체포하여야 한다.

정답) ④

국회법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3.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6년 2차 기출문제)

- ① 경찰행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
- ②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 ③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④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③

경찰법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다음 중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6년 2차 기출문제)

- ㉠ 훈령은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 ㉡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 ㉢ 하급경찰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

며, 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㉔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져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 ㉕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것이야 한다.

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6년 2차 기출문제)

①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하여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② 자연적 접근통제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③ 활동의 활성화 -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④ 유지관리 -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정답) ②

지문의 내용은 ‘영역성의 강화’에 대한 설명이다. ‘자연적 접근통제’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 차단기·잠금장치·방범창의 설치 등과 관련이 있다.

6.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명시된 경찰관의 경찰장구·분사기·최루탄·무기 등의 사용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6년 2차 기출문제)

① 경찰장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② 분사기 및 최루탄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③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④ 살수차·분사기·최루탄·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2.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7. 「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2차 기출문제)

- 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시보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②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이나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휴직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한다.
- ③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 ④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할 때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여야 한다.

정답) ③

-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이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8. 다음은 공직 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6년 2차 기출문제)

- ㉠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 ㉡ 계급제는 이해력이 넓어져 직위분류제에 비해서 기관 간의 횡적 협조가 용이한 편이다.
- ㉢ 직위분류제는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된 후 독일 등으로 전파되었다.
- ㉣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 직위분류제는 1909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이다.

9. 다음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규정된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6년 2차 기출문제)

- | | | |
|--------|---------------|----------|
| ㉠ 불심검문 | ㉡ 범죄의 예방 및 제지 | ㉢ 무기의 사용 |
| ㉣ 보호조치 |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③④(복수정답)

- 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는 경찰관서에서의 일시 보호, 긴급구호의 요청, 임시영치 등의 조치로 구성된다. 이 중 경찰관서에서의 일시 보호는 대인적 즉시강제, 임시영치는 대물적 즉시강제의 성질을 가지지만, 긴급구호의 요청은 경찰상 즉시강제에 수반하는 후속조치로서 사실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10. 「경찰감찰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6년 2차 기출문제)

- ① 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②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 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찰관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정답) ③

경찰감찰규칙 제18조(심야조사의 금지)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1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 여부에 있어 찬성 측의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6년 2차 기출문제)

- ① 경찰권의 성질상 경찰권의 발동사태를 상정해서 경찰권 발동의 요건·한계를 입법기관이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③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한 경찰권 남용의 가능성은 조리 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 단지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이다.

정답) ④

지문의 내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가 개괄적 수권조항(작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해당한다.

12. 「경범죄처벌법」상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6년 2차 기출문제)

- ① 주거가 확인된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
 ②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③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④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①

경범죄처벌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6년 2차 기출문제)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형법」상 유기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정답)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

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6년 2차 기출문제)

- ①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9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②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 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 ③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 ④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답) 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1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6년 2차 기출문제)

- ① 질서유지선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표지(標識)를 말한다.
- ② 집회현장에서의 확성기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인 경우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이다.
- ③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②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단위: Leq dB(A)]

시간대	주간(해뜨기 후 ~ 해지기 전)	야간(해진 후 ~ 해뜨기 전)
-----	-------------------	------------------

대상 지역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5 이하	65 이하

16. 다음은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2016년 2차 기출문제)

불만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하여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 ① 선수승화법
- ② 전이법
- ③ 지연정화법
- ④ 경쟁행위법

정답) ④

17.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6년 2차 기출문제)

- ①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채혈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채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②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정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

정답) ②

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대법원 2001.8.24, 선고, 2000도 6026, 판결]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① 손해배상(기)[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32132, 판결]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채혈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채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받

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③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정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 집행 방해·도로 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대법원 2012.2.9, 선고, 2011도4328, 판결]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8. 「보안관찰법」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6년 2차 기출문제)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대상자는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교도소등”이라 한다)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찰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③

보안관찰법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18조제4항 단서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19. 「출입국관리법」상 상륙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6년 2차 기출문제)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 등의 장, 운수업자, 「수상에서의 수

색·구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5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입국관리법 제14조의2(관광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2016년 2차 기출문제)

-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③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③

범죄인 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 인도법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016년 2차 시험 이상훈교수 경찰학 강평

1. 총론과 각론의 출제비율

이번 시험은 총론에서 10문제, 각론에서 10문제가 출제되어 지난 1차 시험과 동일한 비율로 출제되었고, 과년도 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2. 이론과 법령의 출제 비율

총론에서는 1번 문제(국가경찰과 지치경찰)와 4번 문제(경찰조직법_훈령), 8번 문제(경찰관리_인사관리_공직의 분류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11번 문제(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일반적 수권조항에 대한 논의)가 출제되었고 각론에서는 5번 문제(생활안전경찰_범죄학_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와 16번 문제(경비경찰_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17번 문제(음주운전 관련 판례)가 이론부분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나머지 13문제는 모두 법령에서 출제되어 예년의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론문제보다는 법령문제의 출제비중이 높았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차 시험과 비교해보면 이론문제가 4문제에서 7문제로 늘어 지난 시험보다 이론부분의 출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험이었지만, 이론문제 자체가 쉽게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어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BOX형 문제

BOX형 문제는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BOX형 문제의 수가 굉장히 적어 수험생들이 쉽다고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4. 시험의 전반적 난이도

법령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어렵게 느낄만한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이론 수업시간이나 기출문제풀이에서 전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2번 문제, 9번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다소 까다롭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또한 몇몇 문제의 경우 다른 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빼앗긴 수험생들이 급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제들도 섞여 있어 전체 수험생들의 전반적인 점수는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새로운 유형의 문제

이번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평소 경찰학 수업시간에 접해보지 못한 문제로 우선 2번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 질서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경찰의 지역관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다뤄지는 법 적용의 일반 원칙에 대한 내용이므로 법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쉽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회법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④번 지문을 골라낼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모두 옳은 지문으로 착각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번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 BOX 안의 보기만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졌다면 굉장히 좋은 유형의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제 오류로 인해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제라 조정점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의 2문제는 쉽다고 생각하면 쉽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수험생들의 접근방식에 따라 체감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 문항별 개별 지문 검토

우선 7번 ‘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 관련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으나 ④번 지문의 경우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시보임용의 면제사유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던 수험생들은 ④번 지문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③번 지문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8번 ‘공직 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출문제풀이와 문제풀이 시간에 살펴본 사항으로 수업시간에 집중한 수험생들은 직위분류제가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라는 사항을 알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다음은 10번 ‘경찰감찰규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①번 지문(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의 내용은 법령특강시간에 다루었던 사항으로 경찰공무원임용령상 ‘전보의 제한’관련 규정과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13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①번 지문과 관련하여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시 임시조치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였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걸러내지 못해 옳은 지문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매우 세밀한 사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지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문들이 옳은 지문들이므로 요령으로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17번 ‘음주운전 판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매우 생소한 판례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승진시험과 간부시험에 이미 출제되었던 판례가 섞여 있으므로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한 수험생들은 크게 무리없이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상의 문제들은 개별 지문들이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긴 했으나 문제 속의 나머지 지문들이 쉬운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어,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쉬운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했던 수험생들은 실수를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 결론

직접 시험을 치른 수험생(6개월 이상 시험을 준비)들의 의견은 지난 1차 시험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출제 난이도였으며, 각 문제의 개별적 지문을 분석할 경우 평소 자주 출제되어 많은 준비를 한 부분에서도 낯선 지문들이 간간히 섞여 있어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평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이나 문제풀이를 통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던 부분에서 출제되어 지난 1차 시험때처럼 손도 대지 못한 문제는 없었다는 수험생들이 많았습니다.

가채점 결과 현재까지 만점을 얻은 수험생들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표본의 수가 많지 않아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부를 한 수험생의 경우 55점~60점 사이의 점수를 얻은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그리고 위의 강평을 토대로 할 경우 이번 시험은 85점~90점 정도의 점수를 얻은 수험생들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이며, 80점 이상이면 조정점수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평소 이론수업과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한 수험생이라면 85점 정도의 점수를 기대할 만한 난이도 조절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2차 시험 경찰학 시험문제에 대한 강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